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4
----------	-----

2018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이준형 의원 외 10명
- 나. 발의일자 : 2018년 10월 17일
-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 라. 상정결과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12월 19일,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준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 (3) 기 타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안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임원 임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2018년 10월 17일 기획경제 위원회 이준형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여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공기업법」 제5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임원 임기 규정

「지방공기업법」

-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받는 지방 공사 및 공단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총 5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은 동 개정안의 대상인 서울디자인재단 외에도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등 18개 기관임.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각 조례와 정관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과 동일하게 3년이지만¹⁾ 연임의 경우 각 기관의 형태, 특성 및 업무내용에 따라 연수와 횟수에 차별이 있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규정

(2018년 10월 기준)

기 관 명	조례내용			정관내용
	임기규정 유무	임기	연임	
서 울 의 료 원	-	-	-	3년, 1회
서 울 연 구 원	정관	-	-	3년, 연임
서 울 산업진흥원	정관	-	-	3년, 3년
서 울 신용보증재단	-	-	-	3년, 연임
세 종 문 화 회 관	조례	3년	1회	3년, 1회
서 울 여 성 가 족 재 단	조례	3년	정관	3년, 3년
서 울 시 복 지 재 단	조례	3년	정관	3년, 3년
서 울 문 화 재 단	정관	-	-	3년, 3년
시 립 교 향 약 단	정관	-	-	3년, 1회

1) 서울장학재단의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서 울 디 자 인 재 단	정관	-	-	3년, 3년
1 2 0 다 산 콜 재 단	조례	3년	정관	3년, 3년
서 울 장 학 재 단	조례	3년	1회	3년, 1회(이사장) 2년, 연임(이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	-	3년, 연임
5 0 플 러 스 재 단	조례	3년	정관	3년, 3년
서 울 디 지 텔 재 단	조례	3년	정관	3년, 연임
공 공 보 건 의 료 재 단	조례	3년	정관	3년, 3년
서 울 기 술 연 구 원	정관	-	-	3년, 연임
서 울 관 광 재 단	조례	3년	정관	3년, 3년

- 동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이준형 의원 외 10명은 시민 정보제공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고자 하였으며, 제 284회 정례회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의 산하 4개 재단 중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서울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하였음.

이 중 동 개정안의 대상인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 임원의 임명, 임기 및 해임 등은 자체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명기되었으나 연임의 경우 횟수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의 임원 임기 규정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3항은 이러한 사안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정관과 동일한 임원 임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제3항

제6조(임원) 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방공기업법」처럼 해당 기관의 임원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바 이를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동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조례에 임기 규정이 없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조례 개정도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²⁾.

2) 제284회 정례회에서 동 개정안을 포함한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의 4개 재단은 모두 조례에 임원의 임기가 명시되게 됨.

-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이 책임경영 강화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개정이므로 서울시 정책과 부합하고, 개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산소요 등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의자 : 이준형, 문병훈, 이호대,
이세열, 박기재, 김제리,
오중석, 한기영, 이현찬,
오현정, 오한아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

-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참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 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p> <p><u>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u></p> <p>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으로 한다.</p>	<p>제6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 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④ (현행과 같음)</p>